

201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행정 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가 」 ()

1. **改定理由及び主要内容**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 포장에 적합성 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소형제품의 크기를 명확화,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LED랜턴 등 일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경감 하고,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및 직류전원장치류를 분류기준에 맞게 재분류,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政府組織改編により所管省庁の名称変更に影響を受けないように恒久的識別表示の使用、適合性評価表示時点の明確化、製品の包装に適合性評価表示義務の負担の軽減、小型製品のサイズを明確化、重複認証を解消するために、国民安全先の消防用品を適合性評価の対象機材編入、電磁波の危害の可能性が大幅に低いLEDランタンなどの一部の製品を適合性評価の対象から除外するなどの適合性

評価規制の改善を通じてメーカーの認証負担を軽減し、他の移動手段の電動機の気流と直流電源装置類を分類基準に合うように再分類、タイプミス訂正等、いくつかの不備を改善するため

2.

가. (5) 適合認証書類の提出方法の改善(第5条)

-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추후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 매 1년마다 제출하는 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및 회로도의 제출은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回路図を提出せず、適合の認証を受けた輸入者が今後回路図を提出された場合、毎1年ごとに提出する報告書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成績書と回路図の提出は変更申告手続を準用すること

. 가 (23 , 5)

適合性評価を表示する方法の改善(第23条、別表5)

-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 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및 판매 시 표시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適合性評価を表示視点を通関前に明確にすることで、輸入及び販売時に表示の適用の混乱を最小限にする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으로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

* R(Radio Act, 전파법) 政府組織改編による所管省庁の名称変更に影響を受けない恒久的識別表示*使用でメーカーと消費者の混乱と不便を防ぐ* R (Radio Act、電波法)

-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透明梱包材を使用して梱包状態での製品の適合性評価の表示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梱包には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会社の負担を軽減
- 병행수입 제품 구입 시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並行輸入品購入時のバイヤーが直接製品の表面に適合性評価の表示を取り付けることができよ

우에 스테커나 등을 제공수용할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의 표시를省略할 수 있는
우에 회사에 부담을 경감

- 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 하이픈(-) 외 언더바(_)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적합성평가를 표시의 제품의 식별符호에 하이픈(-) 以外
언더바(_)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가
(2, 3) 消防用品を適合性評価対象機材に含ませる & 一部の機材を再分類(別表2, 別表3)

-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편입

重複認証を解消するために、国民安全先所管消防用品を適合性評価対象機材に含ませる

-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에서 제외된 이동수단용 전동 기기류와 직류전원장치류를 기자재 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분류自動車や火花点火エンジン駆動機器類から除外された移動手段の電動機器類と直流電源装置類を機材分類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再分類

-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기라이터 및 LED랜턴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電磁波の危害の可能性がかなり低い電気ライターとLEDランタンを適合性評価の対象から除外

가 (1 ,
5 , 6 , 8)

適合性評価の円滑な業務遂行のための書式を変更する(別紙第1号書式、別紙第5号書式、別紙第6号書式、別紙第8号書式)

-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강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신청서의 적합성평가 적용분야에 “전자파강도” 항목 추가

一部の家電機器に「電磁波強度」の基準をの適用することにより、適合性評価申請書の適合性評価の適用分野に「電磁波強度」の項目を追加

- 불법기자재 단속·조사 시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외관사진을 첨부하도록함

違法機材取り締まり・調査時の現場で製品を確認できるように、「適合性評価基準を満た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確認書」に外観写真を添付するようにする

・ ()

- 소방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부칙)

3.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XX월 XX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 338-4712

○ 팩스 : 061) 338 - 4719

○ 전자우편 : wnkim@korea.kr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4.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규제검토)

「 가 」

◎ 2017-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 가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나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로 한다.

제5조제7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제7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의 단서에 따른 회로도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성적서의 제출은 제16조제1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제3호 나목의 “따른”을 “따른 적합인증”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단서와 제6호 중 다목 3)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제4호의 디목과 제16호·제17호와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자파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	가. 자동차 기기류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p>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p> <p>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p> <p>1) 방폭형인 것</p> <p>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 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p> <p>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 기기인 것</p>	<p>다. 이동수단용 전동기기</p>	1) 전동자전거				
		2) 전동보드				
		3) 전동휠체어				
		4) 전동스쿠터				
		5)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p>16. 소방기기류</p>	1) 누전경보기(수신부)					
	2) 가스누설경보기					
	3) 수신기					
	4) 증계기					
	5) 감지기					
	6)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8) 가스 -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9)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2)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탐퍼					
	13) 자동폐쇄장치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15) 플랩댐퍼					
	16) 유도등					
	17) 비상조명등					
	18) 기타소방기기류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17.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착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제외)				
<p>비 고</p> <p>1.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p> <p>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p> <p>다.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p> <p>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p> <p>마. 카메라 렌즈</p> <p>바.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p> <p>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p> <p>2. 제4호 또는 제7호의 기자재 중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제4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4. 제5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별표 3] 제8호 가목의 “가. 전자식스위치(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를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를 삭제하고, 마목의 ”마.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를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를 삭제한다.

[별표 5] ‘2.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하고, ‘3. 전자적 표시방법 (e-labelling) 방법 및 절차’ 중 가목 3)의 “적자적“을 ”전자적“로 한다.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 표시방법

-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 2) 단면적이 최대 400 mm²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4)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타인(打印)·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u>R</u>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 식별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사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7] 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대상 기자재 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제4호의 디목과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2. 제8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전동자전거	MOV11
	2) 전동보드	
	3) 전동휠체어	
	4) 전동스쿠터	
	5)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MOV99
16. 소방기기류	1) 누전경보기(수신부)	FIR1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2) 가스누설경보기	FIR2
	3) 수신기	FIR3
	4) 중계기	FIR4
	5) 감지기	FIR5
	6)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FIR6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FIR7
	8) 가스 -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FIR8
	9)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FIR10
	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FIR11
	12)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탐퍼	FIR12
	13) 자동폐쇄장치	FIR13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FIR14
	15) 플랩댐퍼	FIR15
	16) 유도등	FIR16
	17) 비상조명등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FIR18
17. 각 호의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PWR11

별지 제3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각 서식의 발급일자 중 “Data”를 “Day”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가
			가	

	가	가		
가			[]	[]
			[]	[]

가



1.

-

2.

-

3. < >

4.

=

5.

=

.(: , ,)

6.

=

가

7.

()

=

“

가

”

8. _____

=

9. _____

=

10.

/ 가

-

2 1

,

가

가

11.

-

가

12.

-

13.

가

-

.(: KN22

(B))

14.

가

-

가

()

15.

-

10 1

가

16.

-

가

가

·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附則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xx호, 2017.xx.xx.>

附則<国立電波研究院告示第2017-xx号、2017.xx.xx.>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1条(施行日) この告示は、告示した日から施行する。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16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第3条第2項の規定による別表2の第16号に該当する機材は、2017年12月19日から施行する。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第2条(経過措置) この告示の施行当時従前の規定により認定を受けた機材は、従前の規定に従う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この告示の施行当時既に受信され、処理中に認証の申請件従前の規定に従う。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第23条の規定による適合性評価の表示は2018年6月30日までに告示施行当時従前の規定による適合性評価表示と組み合わせ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3条(他の告示の改正) 「放送通信機資材などの試験機関の指定及び管理に関する告示」の別表1の(b)に試験項目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시험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